

5.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37호 1998. 8. 8.

주요내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영 제24조제7항”을 “영 제24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 본문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 제5항 본문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항 제2호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조 제6항 내지 제12항 및 제14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조 제15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한다.

제9조 내지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중 “영 제30조의2제7항”을 “영 제30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영 제30조제10항”을 “영 제30조제10항·영 제37조의9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의3제2항제1호중 “영 제37조의3제16

항”을 “영 제37조의3제17항”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영 제37조의3제17항”을 “영 제37조의3제18항”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제2호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영 제37조의3제1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라 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④영 제37조의3제17항 및 동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자산총액에서 동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공제한다.

⑤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발생으로 자기자본이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⑥금융기관부채상환일 전·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 법인을 말한다) 및 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제20조의5 내지 제20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5(세액감면신청서 등의 제출) ①

영 제37조의3제20항 및 영 제37조의10조의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감면)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과 같다.

②영 제37조의3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및 자구계획이행보고서는 별지 제19호의4서식 및 별지 제19호의5서식과 같다.

③영 제37조의3제22항(영 제37조의7제13

항·영 제37조의8제7항 및 영 제37조의10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및 자구계획서는 별지 제19호의6서식 및 별지 제19호의7서식과 같다.

④영 제37조의3제22항(영 제37조의7제13항·영 제37조의8제7항 및 영 제37조의10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제출함에 있어서 1차연도에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와 별지 제19호의4서식에 의한 자구계획이행보고서에 의하고, 2차연도 이후에는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의한 재무구조개선(자구) 계획이행상황명세서에 의한다.

⑤영 제37조의7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와 부채상환명세서는 별지 제19호의9서식 및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의한다.

⑥영 제37조의10제4항 및 동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계획서, 구조조정사용계획서, 구조조정사용명세서 및 구조조정사용완료보고서는 별지 제19호의 11서식 내지 별지 제19호의13서식에 의한다.

제21조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1조에 규정된

1급자동차정비업 또는 2급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으로 한다.

제24조의2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읍제2산업단지
2. 정읍제3산업단지
3. 대불산업단지
4. 북평국가산업단지
5. 북평지방산업단지

제27조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31조제7항중 “납세지소관 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이 당해 통장의 개설전에 개설된 다른 통장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저축가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

에 같은 종류의 통장이 없음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당해 저축계약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40조의3제1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그 초과한 날부터 이를 제1항의 통장으로 보지 아니한다.”를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동조 제4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에탁금 또는 출자금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4항중 “제3항”은 “제2항”으로, “법 제80조”는 “법 제81조제1항제2호”로 본다.

제40조의4제2항중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로 본다.

제40조의5제1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가계 장기저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4항중 “제3항”은 “영 제75조의3제5항 본문”으로, “법 제80조”는

“법 제80조의3”으로 본다.

제40조의6 및 제40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6(근로자주식저축의 범위 등) 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근로자주식저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4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은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으로, “법 제80조의4”로 본다.

제40조의7(근로자우대저축의 범위 등) ① 동일인이 영 제75조의5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통장을 2인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근로자우대저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4항중 “제3항”은 “제1항”으로, “법 제80조”는 “법 제80조의5”로 본다.

제41조제1항 및 제2kd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소액가계저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4항중 “법 제80조”는 “법 제81조제1항제5호”로 본다.

제42조제1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재정경

제부령”으로 하고, 동항 제4호중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를 “한국주택은행법폐지 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며, 동조 제2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 제5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 제5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항 제2호중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을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소액채권저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4항중 “제3항”은 “제6항”으로, “법 제80조”는 “법 제81조제1항제6호”로 본다.

제42조의2의 제목중 “판정”을 “판정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가계생활자금저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4항중 “제3항”은 “제1항”으로, “법 제80조”는 “법 제81조의2”로 본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영 제84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투자신탁협회 등이 증권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1998년 2월 6일에 설립한 투자신탁안정기금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제6조, 제6조의2, 제8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4조제1항 내지 제7항, 제20조, 제20조의2제1항 본문, 제20조의4제1항, 제23조 본문, 제24조 본문, 제25조, 제26조제3항, 제28조의2, 제29조 전단, 제30조제1항 본문·제2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 본문·제2항, 제36조제1항 본문, 제38조 전단, 제40조의2제2항 본문·제4항 본문, 제45조의3제2항 본문, 제45조의4 본문, 제46조제1항 본문·제2항, 제46조의2제1항,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0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51조의2제1항 본문, 제51조의3 본문, 제52조 및 제53조 본문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②설정율란중 “15/100”를 “10/100”으로 하고, 동 서식 뒤쪽의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명세서 작성요령중 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7호로 하며, 동요령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설정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정율(15/100)을 별도로 기입하여 작성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세액면제(감면)신청 근거조항 명세

· 사업전환중소기업: 제30조제10항	· 중소기업자 경영안정지원 : 제30조의2제8항
· 재래사업장 이전 : 제30조의3제9항	· 대도시공장 지방이전 : 제41조제6항
· 법인본사 지방이전 : 제42조제10항	· 영농조합법안에 대한 현물출자 : 제51조제9항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제51조의2제7항	·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 : 제54조제4항
· 공공사업용 토지등양도 : 제60조제4항	· 개발사업시행자의 토지등 양도 : 제61조제5항
· 국가등에 토지등 양도 : 제68조제7항	· 10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 : 제67조제8항
· 5년 이상 가동공장 이전 : 제68조제7항	· 학교법인의 토지등 양도 : 제70조제4항
· 사회복지법인 등의 토지등 양도 : 제71조제5항	· 박물관등 이전 : 제71조의2제5항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 제30조제10항” 아래에 “· 제37조의9제5항”을 신설하고, 동 서식 뒤쪽의 작성요령 제5호중 “실지 취득

가액을”을 “실지 취득가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8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을”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9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9서식 내지 별지 제19호의1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의3서식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제40조의5제2항, ·제42조의2)”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2항,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2조의2, ·재정경제부령 제14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2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통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1998년 4월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가입자가 1998년 8월 31일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통장보다 먼저 개설된 통장에 대하여 그 저축취급기관에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세금우대적용의 배재를 신청

한 경우 그 선택한 통장에 대하여는 제40조제4항 및 제5항·제40조의3제7항·제40조의5제4항·제40조의6·제40조의7제2항·제41조제5항·제42조제8항·제4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영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금고에 1998년 4월 30일 현재 2이상의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그 예탁금 또는 출자금의 합계액이 제40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1998년 8월 31일(저축가입자가 선택한 통장의 만기일이 그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만기일) 이전에 저축가입자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다른 통장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을 그 선택한 통장으로 합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통장을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으로 보아 제4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제출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회보